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9, No.10 (December 2009) pp.68-84

임오(1882)년 가례 왕세자 복식연구(1)

- 면복을 중심으로 -

안 애 영* · 박 성 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A Study of the Ceremonial Costume of the Crown Prince in the Year 1882

- Focusing on the Myeon-Bok (Royal Robe) -

Ae-Young An* · Sung-Sil Park+
De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투고일: 2009. 9. 9, 심사(수정)일: 2009. 10. 7, 게재확정일: 2009. 10. 16)

ABSTRACT

A state wedding ceremony of kings and crown princes in the Chosun Dynasty was systemically formalized in a book Five National Ceremonies (1474) as one of the five major formal events of the royal auspicious ceremonies(Ga-rae). For a state wedding, Ga-rae Protocol was made by a devision for Ga-rae temporarily established for the occasion. A total number of auspicious ceremony protocols of kings and crown princes amounts to 20 in the span of 279 years. Among the proposals, the wedding of Soon-jong in the Imo Year of 1882 is described most thoroughly. Nap-bin-ui(reception of bride) comprises six rituals which are nap-chae, nap-jing, go-gyi, chaek-bin, chin-young, and dong-ryae. A grand formal costume of the crown prince is granted based on the 'Seven Parts Formal Costume' of the first year of the king Moon-jong in 1450 together with an official costume for crown prince(Gon-myeon-chil-jang) arranged in the third year of the king Young-rak. In the royal palace of the Chosun Dynasty, the granted formal costume of the crown prince is officially recorded as a code and presented in a Gwon-ji-il section of the Formalities of the Five National Ceremonies. The formal costume and its accessory set for the crown prince recorded as a code are described in Sangbang Jeong-ryae as the formal costume of the crown prince section published by the king's request at the high senate commission in the 28th year of the king Young-jo in 1752.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ormal costume of the crown prince as an auspicious ceremonial costume worn at the wedding in the year of Imo.

Key words: Ga-rae Protocol(嘉禮都監儀軌), Proposal(件記), Six Rituals(六禮), Chin-young(親迎), Meon Bok(冕服)

Corresponding author: Sung-Sil Park, e-mail: sunrise-05@hanmail.net

Ⅰ. 서론

순종(1874~1926)은 고종과 명성왕후 민씨의 소생으로 1875년 2세에 세자로 책봉된 후 두 번의 혼인을 하였다. 9세 때인 1882(고종19)년 세자빈 민씨(1872~1904)와의 혼인인 임오년 왕세자 가례와 민씨 死後 33세 때인 1906(光武10)년 황태자비 윤씨(1894~1966)와의 혼인인 병오년 황태자 가례이다. 본고는 임오년 가례시 착용된 면복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 왕조에서 왕과 왕세자의 국혼인 가례의식 절차는 개국 초인 성종 5년(1474)에 완성된『국조오례의』권3과 권4 가례, 면복은『국조오례의서례』권1 길례에 제복도설로 제시되어 있다. 왕의 구장면복은 明永樂 원년(1402년)제도, 왕세자의 면복은 七章服으로 景泰 원년(1449년)제도에 기준한 것이다. 왕세손의 가례는 영조 27년(1751) 『국조속오례의보서례』권2 가례에 의식절차, 면복은 『국조속오례의보서례』권1 길례에 도설로 제시되어 있다. 면복은 왕통을 승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조선 전시기에 착용되었으며 위치에 따라 복식구성에 차이를 두었다. 따라서 면복제도에 관한 자료는 여러 가지 왕실문헌에 제시되어 있다.『국혼정례』(1749),『상방정례』(1752),『가례도감의궤』,『국장도감의궤』,『종묘의궤』(1667),『사직서의궤』(1783),『경모궁의궤』(1777~1800)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가례도감의궤』로 남아있는 왕세자의 가례는 昭顯世子嘉禮(1627), 顯宗明聖后嘉禮(1651), 肅宗仁敬后嘉禮(1671), 景宗端懿后嘉禮(1696), 景宗宣懿后嘉禮(1718), 眞宗孝純后嘉禮(1727), 莊祖獻敬后嘉禮(1744), 文祖神貞后嘉禮(1819), 純宗純明后嘉禮(1882) 9건으로 20건의 국혼기록 중 절반에 해당한다. 이 의궤들에는『국혼정례』의 발간(1749)을 전후하여 전기의 의궤 7건에는 왕세자 가례복을 의대로 묶어 그 안에 '면복 1건'의 기록이 있고, 후기 의궤 2건에는 왕세자 가례복을 법복과 의대로 나누고 법복 안에 '면복 1건'이 곤룡포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의차에 관한 기록은 역대『가례도감의궤』 가운데 1718년 景宗宣懿后嘉禮와 1819년 文祖(翼宗)神貞后嘉禮 두 건의 경우에 한해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효명세자(익종1809-1830)의 18세 어진이 화재로 인하여 반쪽만 남아 있으나 착장상태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밖에 또 다른 왕실 기록인『궁중발기』는 왕실에서 관례, 가례, 명절, 탄일 등 특별한 때 소요되는 물품 목록을 기록한 문서이다. 장서각에 보관된 950여 점의 발기는 1819(순조 19)년 세자[익종]가례 관례 발기부터 康茂國恥 직후까지 약 100년간에 걸친 내용이다.[1] 이 발기류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임오(1882)년 순종의 왕세자가례 관련내용이다. 이 방대한 양의 기록은 당시 복식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金用淑은 세자빈도 친족 一門에서 선발하여 子婦를 삼아 세자의 장래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이 혼례를 인조 이후의 의궤를 통해서 보건대 유래 없이 호화판을 이룬 국혼이라 하였다.[2]

동일한 주인공의 혼인 기록인 임오가례 관련 의궤와 발기의 기록에서 면복 중단의 衣色이 백색과 청색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국혼을 위해 준비된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의대기록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기록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 중에 의궤 기록과 발기 기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발기는 상궁들의 손에 의해서 작성된 실행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면복연구는 이미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3]가 발표된 바 있으나 일차적으로 임오년 국혼의 발기와 의궤기록, 국말의 실물자료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왕세자 면복 구성 가운데 칠장복, 폐슬, 중단, 상은 복원복제로 고증제작 하였다. 후속연구로 임오년 의대기록도 함께 분석할 것이며 이는 역대 의궤 기록의 제한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왕세자 가례시 法服

조선왕조의 국혼인 납빈의에서 본 의식은 육례로 납채・납징・고기・책빈・친영・동뢰이다. 이 가운데 납채・납징・고기・책빈의는 왕이 교명과 전교를 내리는 의식이고, 왕세자는 세자빈을 친영하는 예와 동

뢰연에서 가례의식을 거행한다. 이 때 친영을 행하기 앞서 부왕으로부터 '안 사람을 맞이하여 종묘의 일을 잇게 하라'는 命을 받는 임헌초계의를 행하는데, 왕세자는 가례법복인 면복을 입고 의례에 참예한다.

왕실 가례의 실행법전인 『국조오례의』에는 왕세자 가례복으로 면복과 조복이 기록되어 있다. 왕세자가 친영에 앞서 임헌초계에 임할 때 면복을 갖추고, 동뢰의 후에는 조복을 상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하여 면복과 조복이 친영과 동뢰의 예복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동뢰의에 조복을 입은 것으로 이해되어 선행연구에서도 왕세자 가례시 육례복식에서 '동뢰연을 치룰 때에 왕세자가 원유관에 강사포를 입고, 동뢰연이 끝나면 상복인 익선관에 곤룡포를 갈아입는다.'[4]라고 하였다.

왕세자의 가례법복은 『국조오례의』가 편찬되기까지 공복, 조복, 면복이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왕세자의 가례복에 관한 기록은 태종 7년 7월 세자가 김한로의 집에 친영[6]할 때 비가 온 관계로 임금님의 임헌초계는 면제하고 세자가 공복차림으로 친영을 한 기록이 있다. 세종 9년 4월 왕세자의 초계례(임헌초계)[7]에서는 '왕세자는 조복을 갖추고 가서 휘빈을 맞아들였다.' 라고 하여 왕세자가 조복을 갖춤을 알 수 있다. 또, 세종 18년 '의정부에서 왕세자의 납빈의·납채 등에 관해 아뢰는 기사[8]에서도 임헌초계에서 전하가 원유관에 강사포차림을 하고, 왕세자는 조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세종실록』오례의 납빈의에는 임헌초계・친영의에 전하와 왕세자 복식이 전하는 면복으로 바뀌어 졌고, 왕세자는 조복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태종 7년 세자의 친영에서 세자가 공복차림으로 친영을 한 기록이 있는 것은 『세종실록』오례의 친영의에 '王世子乘輦小駐, [宮門。 出光化門, 改具公服]' 를 '왕세자가 연을 타고 宮門에서 조금 멈춘다.[光化門에 나가서 公服으로 고쳐 입는다.]' 라고 하여 왕세자가 공복으로 고쳐 입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국조오례의』에는 '王世子乘輦小駐, [宮官出光化門, 改具公服.]'이라 하여 '왕세자는 연을 타고 약간 머무르고, [宮官은 光化門에 나가서는 公服으로 바꿔 입는다.] 하여 공복을 갈아입는 대상이 왕세자가 아니고 궁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왕세자는 임헌초계에 갖추어 입은 면복을 친영과 동뢰의까지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동뢰의 기록에서 왕세자의 복식이 '...王世子及嬪俱興王世子入東房釋朝服具常服...' 이라 하여 조복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종실록』오례의 동뢰의에 '...王世子及嬪俱興王世子入東房釋朝服具常服...' 이 『국조오례의』에 底本이 되어 그대로 옮겨진 오류로 보인다.[9]

왕세자의 가례복이 세종조에서는 조복이었으나 『국조오례의』에 면복인 것은 문종즉위년 5월 『조선왕조실록』[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종 즉위년(1450) 세자 친영 때의 복식을 의정부에서 의논하면서 "세자가 이미 면복을 받았으니, 면복을 착용하고서 친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여 의정부에서 논의한 바

〈표 1〉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오례의』 왕세자 가례시 왕과 왕세자복식

身分		臨軒醮戒	親迎儀	同牢儀	嬪朝見儀
殿下	세종 9년	원유관 강사포	·	·	원유관 강사포
	세종 18년	원유관 강사포	·	·	원유관 강사포
	세종오례의	면복	·	·	원유관 강사포
	국조오례의	면복	·	·	원유관 강사포
王世子	태종 7년	의식면제	공복	[공복][5]	·
	세종 9년	조복	[조복]	조복	·
	세종 18년	조복	[조복]	조복	·
	세종오례의	조복	공복	조복	·
	문종즉위년	면복	면복	[면복]	·
	세조 6년	면복	원유관・강사포	[원유관・강사포]	·
	국조오례의	면복	[면복]	조복	·
	현종 12년	면복	면복	[면복]	

> "殿下께서 親迎하실 때에 世宗께서 冕服 차림으로 명령하셨는데 殿下께서는 梁冠服차림으로써 명령을 받아 친영하셨으니, 그때는 東宮의 의복이 梁冠服보다 나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冕服을 받았으니, 면복을 착용하고 친영하시는 것이 이미 예절에 합당하므로 의심할 만한 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여 왕세자의 면복이 사여되지 않았던 세종조에는 양관복 차림인 조복이 가례복이었으나 왕세자의 면복이 사여된 문종 즉위년 이 후 부터는 면복이 왕세자의 가례법복이 되었음이 확인 된다.[11] 한편 세조 6년(1460)[12]에는 왕세자의 임헌초계에 전하는 원유관과 강사포를 입고, 왕세자가 면복을 입었으나, 禮가 끝나자, 왕세자가 衮冕을 거두고,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어 입고 친영례를 행하는 기록에서 임헌초계와 친영례의 복식을 달리한 기록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종 12년(1671)[13]에는 왕세자의 친영례에 대한 논의에서 '왕세자가 면복으로 예를 행하는데, 규를 잡지 않는 것은 타당치 않을 듯합니다.'라고 하여 왕세자가 친영례에서 면복을 입었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국혼정례』가 편찬되기 이전까지는 왕세자의 가례복 착용에 혼란이 있었다.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의 왕세자 납빈의에 왕세자 가례법복에 관한 기록에도 면복과 곤룡포에 익선과의 기록만 있을 뿐 조복인 강사포와 원유관의 기록은 없으므로 왕세자 가례의식인 육례에서 왕세자는 면복을 갖추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임오년 『왕세자가례도감의궤』의 '가례도감거행물목 별단' 내용에서도 세자궁의 법복 내용에는 면복과 곤룡포가 있고, 조복인 강사포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오년 가례관련 왕세자 의대발기인 『壬午(1882) 2月 千萬世東宮媽媽嘉禮時 衣襨件記』에는 면복과 곤룡포와 함께 강사포의 기록도 볼 수 있다. 발기에 강사포 기록은 가례시 법복의 의미 보다는 의례복 이외의 편복의대인 快子・軍服・汗衫具・多里軍服, 周衣, 快子, 快子・長衣襨, 快子・周衣, 彤衣襨 등이 함께 기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혼례를 기해서 함께 혼수로 준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왕세자 冕服

1. 왕세자 면복의 사여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왕실에서 명으로부터 사여 받은 왕세자 대례복은 세종대까지 六梁冠・朝服・玉帶・玉佩이었다.[14] 그러나 『세종실록』오례의에 오례 / 길례 서례 / 관면도 / 왕세자의 관복에 의하면 象牙笏, 冠은 七梁으로 角簪, 青羅衣와 白紗中單은 검은 깃과 단[緣], 赤羅裳은 검은 단[緣], 赤羅蔽膝, 赤白大帶, 方心曲領, 革帶는 金을 사용, 佩玉, 紫錦綬, 金環, 白色의 襪, 黑色의 履이다. 그러므로 세종대까지 왕세자의 관복은 조복이었다.

세종 32년(1450) 1월에 세종은 왕세자가 신하들과 같은 조복을 입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중국에 왕세자 면복으로 7장복을 청하였는데[15] 같은 해[문종 즉위년(1450)] 5월에 七章冕服 1副를 가져온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16] 영락 3년에 제정한 왕세자관복[冕服-衮冕七章][17]제도와 같다

조선왕실에서 제도화된 왕세자의 면복은 『국조오례의서례』卷1 길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조대에 『경모궁의궤』[18]卷 4와 『종묘의궤』(헌종 8년, 1667), 『사직서의궤』(정조 7年, 1783), 『춘관통고』(정조 12년, 1788) 卷11 길례부분 등에도 祭服으로 면복도설이 있는데 이 모든 도설에는 '七章 景泰元年(1450) 欽賜之制'[19]라는 기록이 있어 문종 즉위년(1450)에 사여 받은 면복 내용이 조선왕조 왕세자면복의 底本이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광해 4년(1612)에도 왕세자의 면복을 하사받은 기록[20]이 있는데 하사품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

規例로 기록된 왕세자 면복과 그 부속제구에 대해서는 영조 28년(1752) 상의원에서 왕명을 받아 편찬한 『상방정례』천(天) 중 總目에 尙衣院 冕服閣에 봉안된 세자궁 법복의 내용이 있다.

2. 임오가례 면복

왕세자 가례도감의궤 9건은 『국혼정례』의 발간(1749)을 전후하여 전기의 의궤 7건에는 왕세자 가례복을 衣襨로 묶어 그 안에 '면복 1건'을 기록하고

〈표 2〉 王世子 冕服 - 七章[景泰元年欽賜之制-國朝五禮儀序例, 경모궁의궤]

名 稱	內 容
圭	制與九章同, 但無刻(靑玉)
冕	制與九章同, 惟八旒每旒八玉三采先朱次白次蒼
衣面	制與九章同,[衣以繪爲之其色玄(靑黑而微有赤意謂之玄]惟繪三章火說見上華蟲宗彝於其上(繪陽事也故在衣繡陰功也故在裳)
衣背	
裳	制與九章同, (裳以繪爲之其色纁..)
大帶	制與九章同, (大帶以緋白錦合而縫之)
中單의 앞	制與九章同, (中單以白繪爲之靑領褾襈裾繪黻九於領)
中單의 뒤	
佩	制與九章同,
綬	制與九章同, (綬以紅花錦爲之施以雙金環)
蔽膝	制與九章同, (蔽膝以繪爲之其色纁上有紕下有純去上五寸繡以藻粉未黼黻)
方心曲領	制與九章同, (方心曲領以白羅爲之旁有兩纓(左綠右紅)
革帶	制與九章同, 但玉無刻(革帶用玉鉤大明集)
舄	制與九章同, 有綦(舄以緋緞爲表白繪爲裏有)
襪	制與九章同, 有綦(襪以緋緞爲表緋綃爲裏有)

〈표 3〉 임오년과 기묘년『왕세자가례도감의궤』尙衣院 嘉禮敎是時 法服

種類	服飾	衣次	己卯年
法服	冕服1件		同[21]
	赤襪1件	以上次入	同
	赤舄1部	造入次	同
	龍袍1件	鴉靑小雲紋匹緞1匹	(衰龍袍) 同
	加文刺1次	大紅小雲紋匹緞1匹	同
	翼善冠1部	造入次	同

있고, 후기 의궤 2건에는 法服과 衣襨로 나누어 법복 안에 '면복 1건'이 곤룡포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9건의 의궤가운데 『景宗宣懿后嘉禮儀軌』(1718)에만 면복 1次에 대한 기록이 '鴉靑熟綃 二匹, 白熟綃 一匹 十五尺, 大紅熟綃 白熟綃一匹, 入漆次, 畵章次, 綬次, 大帶次, 靑組次, 方心次, 玉圭畵家次, 赤襪一件次'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1819)에는 면복 1件의 의차 기록이 '鴉靑熟綃 二匹, 白熟綃 一匹 十五尺, 大紅熟綃 一匹과 赤襪 一件과 赤舄 一部'로 부분 기록이 있다.[22]

임오가례에서 왕세자 면복에 관한 내용은『왕세자가례도감의궤』[23] 嘉禮都監擧行物目別單과 一房儀軌에 尙衣院 嘉禮敎是 등에 기록이 있다. 세자궁의 冕服一件의 기록에는 '己卯 判付內鴉靑熟綃 白衫次 裳次 入之'라는 附記가 있다. 이것은 己卯(1819)년 왕세자 가례 의궤에 '鴉靑熟綃 二匹, 白熟綃 一匹 十五尺, 大紅熟綃 一匹'로 알 수 있다. 또한 '一房儀軌의 尙衣院 嘉禮敎是時'에는 법복의 종류와 의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기묘년(1819)의궤와 복식명과 의차가 같음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오(1882)년 가례도감 거행내용에서 신사년(1761)과 기묘년(1819)의 의궤를 전례로 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

『상방정례』권3 국혼에는 '國婚定例同'이란 附記가 있다. 임오년 의궤에서도 법복과 의대 복식이 '가례도감거행물목 별단'의 내용은 『국혼정례』와 일치하며, '일방의궤의 상의원'기록은『상방정례』와 의차가 같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임오년의 의궤 기록이『국혼정례』 御製國婚定例卷題에 "....後於戲其尊於戲其尊" 라는 영조의 의지에 따라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壬午(1882) 2月 千萬世東宮媽媽嘉禮時 衣襨件記』[24]에 기록된 면복은 靑衫과 一作을 이루고

있어 의궤에서 면복이 白熟綃[白素中單]와 짝을 이룬 기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면복 고증제작-임오년가례

조선왕실에서 면복을 제작한 기록은 문종즉위년에 염습에 사용할 면복을 결정할 것을 주청하는 내용가운데 본국에서 제조한 면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25] 내용과 단종 즉위년에 문종의 재궁을 현궁에 안치할 때 복완질로 면복을 제작한 기록[26]이 보인다. 또한 선조 33년에도 평소에 尙方에는 면복장인이 있어 면복을 만들었다[27]는 기록으로 보아 사여면복과 본국에서 제조한 면복이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왕세자의 면복은 선조 35년(1602) 기록[28]에서 난리 뒤에 章服을 갖추지 못한 염려와 함께 동궁의 면복 및 백관의 장복이 준비됨을 아뢰는 내용과 광해 2년(1610) 중국 조정에서 합당한 관복을 왕의 나라에서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따르라는 기록[29]으로 보아 이때부터 이미 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방정례』 인(人)에서는 세자궁책례시, 세자궁관례시 면복과 그 부속제구를 제작할 때 필요한 의차를 〈표 4〉에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조오례의서례』와 『경모궁의궤』 등에 제시된 제복도설로 국속제 면복과 부속제구의 素材와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복원에는 색상과 모양, 치수 등에서 한계가 있다.

왕세자의 장례의궤인 『예장도감의궤』에는 흉의장질과 복완질로 채색된 면복일습이 그려져 있다. 1/2 혹은 1/5로 제작한 기록으로 소현세자 『예장도감의궤』[30]에는 복완질에, 1728년 효장세자의 『예장도감의궤』에는 흉의장질[31]에 면복 일습이 그려져 있어 면복 복원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왕세자의 면복제도가 '制與九章同'이라 하였으므로 국왕의 『국장도감도청의궤』에 있는 채색된 면복 도설에서도 보완할 수 있다.

기묘년(1819)에 가례를 한 익종의 왕세자신분의 8류면 7장복의 면복차림 어진(1826, 효명세자)[32]은 화재로 인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왕세자 가례복인 면복복원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밖에 왕세자의 면복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면복의 유물이 현재 국립중앙 박물관에 두 벌 소장되어 있는데[33] 두 벌 모두 국말의 구장복[중요민속자료 제66호 九章 玄衣와 靑色 中單]으로[34] '한 벌은 은조사, 다른 한 벌은 순인 바탕에 커다란 원룡문이 있는 갑사종류의 비단으로 국말자료에는 별문사라고도 명

〈표 4〉『상방정례』 인(人)의 면복

區別	世子宮册禮時	世子宮冠禮時	世子宮嘉禮法服
附記			國婚與 戶曹 國婚定例同,
平天冠		壹部	
冕服次	鴉靑熟綃貳疋,		冕服壹件,
中單次	白熟綃壹匹拾伍尺,		
裳次	大紅熟綃次白熟綃壹疋, 入染次紅花拾柒斤, 梅實拾參斤		
綬次	錦衣鄕職貳尺壹寸, 內拱大紅雲紋紗貳尺壹寸, 銀鉤子貳箇次十品銀壹兩壹錢伍分, 銀圓環貳箇次十品銀壹兩, 鍍黃金柒分, 水銀肆錢		
蔽膝次	大紅熟綃參尺貳寸, 五色多繪壹部,		
大帶次	草綠雲紋匹緞半幅拾參尺, 大紅雲紋匹緞半幅陸尺伍寸, 內拱白無紋匹緞半幅陸尺伍寸, 靑組壹部,		
方心次	白綃肆尺, 纓子大紅紗長壹尺伍寸廣貳寸, 草綠紗長壹尺伍寸廣貳寸,		
靑玉圭壹部	甲家次甘伊次幷大紅廣的半幅捌寸,		
珮玉	壹部		
赤襪次	大紅廣的貳尺柒寸, 內拱大紅水細貳尺柒寸,		赤襪壹件
赤舄	壹部,		赤舄壹件

칭 한 비단으로 제작 되었다. 이들은『임오(1882)정월 천만세 동궁마마 관례의대발기』와『壬午(1882) 2月 千萬世東宮媽媽嘉禮時 衣襨件記』에 면복이 청삼과 一作을 이루고 있는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듯이 동일한 가례의 기록에서 의궤에는 면복 一件의 의차가 '鴉青熟綃 二匹, 白熟綃 一匹 十五尺, 大紅熟綃 一匹'인데, 의대발기에는 면복 의차가 '아청색의 인접문사와 생수갑사'이고, 청삼의 의차가 '일남의 인접문사, 생수갑사'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왕세자면복 일습을 고찰하며 두 문헌을 비교 연구할 의미를 갖게 한다.

연구 자료는 일차적으로『왕세자가례도감의궤』와『궁중별긔』이며, 문종즉위년에 사여된 왕세자면복(景泰元年),『대명회전』(영락 3년정)의 세자관복(대명회전 권60, 예부 18, 관복조 세자관복),『국조오례의서례』와『경모궁의궤』』의 왕세자면복(제복)도설,『국장·예장도감의궤』의 복완질 면복도설,『국혼정례』,『상방정례』등의 문헌과 익종(효명세자)어진, 중요민속자료 제66호(구장복)이다. 또한, 면복과 적의 부속제구는 왕, 왕세자, 왕비, 세자빈이 같은 부분이 많으므로 궁중유물전시관에 소장된 영왕비의 유물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 내용은 왕세자 면복인 칠장복 일습으로 면복과 함께 규, 면, 의, 상, 중단, 패, 수, 폐슬, 대대, 말, 석이며, 이 가운데 의, 중단, 상, 폐슬은 복원 복제하여 제작 하였다.

1) 규(圭)

왕세자의 규는 문종 즉위년에 사여[이후는 사여제로 함]받은 것은 옥규로 되어 있어 대명회전 영락 3년정 세자관복 면관제도[이후는 대명회전이라 함]에 길이가 9寸인 옥규와 같으며 아래 부분은 비단[錦]으로 싸준다. 그러나『국조오례의서례』등에는 '制與九章同 但無刻'이라 하여 전하와 같이 청옥으로 하고 조각이 없다고 하였다.『예장도감의궤』에도 청옥규로 되어 있으므로 왕세자의 규는 청옥으로 조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표 5〉그러나 길이에 대해서는 왕과 왕세자의 규가 9촌으로 같으나 이는 영락 3년정 대명회전에도 친왕관복(곤면-면복구장)은 '玉圭·長九寸二分五里'이며, 세자관복(면복-곤면칠장)은 '玉圭·長九寸。'로 차이를 두고 있다.『국조오례의서례』에서는 '制與九章同但無刻'이라 하였으나 영조 대의『국조속오례의서례』에는 왕세손의 규를 '圭以青玉爲之制同王世子圭而惟長七寸'이라 하여 7촌으로 왕세손 규의 길이를 왕세자와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왕세자의 규를 무늬 없는 청옥으로 모양은 영왕비[35]와 같이 하였다.

2) 면류관(冕旒冠)

왕세자 면류관의 사여제는 '八旒香皂皺沙平天冠' 이며, 대명회전에는 겉은 검고, 안은 붉으며, 앞은 둥글고 뒤는 모가 진 것으로 앞뒤에 각각 8류가 있으며 매류가 오채로 끈이 드리워 있는데 각각에 三采의 구슬이

〈표 5〉圭

文 獻	記 錄				
大明會典 (永樂 3年定)	玉圭·長九寸.以錦約其下.弁韜.				
문종즉위년사여면복 (景泰元年)	玉圭一枝[袋全.]				
國朝五禮儀序例	制與九章同但無刻				
상방정례	青玉圭				
禮葬都監儀軌 (孝章世子: 1719~1728)	今番以常時進用青玉圭用之	凶儀 仗秩		영왕비 규와함	

〈표 6〉 冕旒冠[平天冠]

文 獻	記 錄		
大明會典 (永樂 3年定)	冕冠・玄表朱裏.前圓後方.前後各八旒.每旒五采繅八就.各貫三采玉珠八.赤・白・青色相次.玉衡・金簪・玄紞・垂青纊充耳.用青玉.朱紘纓・承以白玉瑱		
문종즉위년사여면복 (景泰元年)	八旒香皂皺沙平天冠	凶儀 仗秩	
國朝五禮儀序例	惟八旒每旒八玉三采先朱次白次蒼		
禮葬都監儀軌 (孝章世子: 1719～1728)	今番以常時進用青玉樑青色注纊珠用之 所入金三戔 銀三兩 冒段半骨一尺五寸水 銀一兩 壯紙五張,,三色玉珠,皁羅八分, 砒礪七戔, 上梧桐板木		

적・백・청의 순서로 8번 꿰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국조오례의서례』등의 제복도설에도 전하와 같으며 '惟八旒每旒八玉三采先朱次白次蒼'라 하여 팔류면으로 매류에 삼채가 주・백・창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옥형에 금잠을 꽂고 면 앞에 현담을 달며 청광을 드리워 충이를 삼으며. 주색의 끈을 백옥진과 잇는다고 하였다.『예장도감의궤』에는 〈표 6〉에서와 같이 재료까지 제시 되어 있으나 복완품으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익종어진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면류관의 앞모습을 제외하고 한 면을 볼 수 있어 박성실은 왕세자의 면류관을 재현하였다.

3) 의(衣)

왕세자 면복 의에 대한 기록은 '深青粧花衰服'[사여복]、'青衣三章. 火一在肩, 其二與華蟲・宗・彝各三・在兩袖・皆織成. 本色領襟襈裾'[대명회전], '制與九章同,[衣以繪爲之其色玄(青黑而微有赤意謂之玄]惟繪三章火說見上華蟲宗彝於其上(繪陽事也故在衣繡陰功也故在裳)'[경모궁의궤], 寃服次에 '鴉青熟綃貳疋'[상방정례]이 있다. 임오년가례 의궤는 상방정례와 같으며, 동궁마마 의대발기에는 '아청인접문사와 아청생수갑사'이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衣의 색은 심청・아청・현색으로 청색의 계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현색은 즉 '青黑而微有赤'이라 하여 붉은 빛이 도는 짙은 흑색으로 갈까마귀의 색인 아청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중요민속자료 제 66호'에서 확인된다.

소재는 사여복은 장화곤복이라 하여 장화단으로 보이나 이는 중국에서 재직한 것이며, 왕실기록에는 증・숙초・갑사 등이다. 감어림은 상방정례와 가례도감의궤에만 두 필로 제시되어 있고, 예장도감의궤에는 '青綃 9尺, 白綃 4尺 8寸'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고증 복원에 참고가 어렵다.

왕세자 면복의 七章가운데 衣의 三章紋은 대명회전에는 '火一在肩, 其二與華蟲・宗・彝各三・在兩袖・皆織成'이라 하여 장문을 직성 하였으나 본국의『국조오례의서례』나 의궤의 도설에서는 火・華蟲・宗彝의 三章이 각 3쌍씩 그려져 있는데 火의 한 쌍은 양 어깨에 그리고 나머지 2쌍과 華蟲・宗彝 각 세 쌍은 양 소매 뒤 수구 쪽으로 나란히 그렸다.[惟繪三章火說見上華蟲宗彝於其上(繪陽事也故在衣)][36]

衣의 길이는『대명회전』은 裳의 문장이 보이도록 中單보다 짧으나 왕실 문헌자료의 도설을 비교하면 衣의 길이가 중단과 거의 같다. 그러나 영조 19년에 면복의 제도를 개정하라는 내용[37]에

> '면복의 纁裳이 玄衣의 가운데에 가려지니, 尙衣院으로 하여금 그 제도를 고치고 그 길이를 줄여 '위는 玄色 아래는 纁色'이라는 뜻을 표하게 하라'

하여 현의의 길이를 논하고 있지만 정조 대의 의궤 도설자료에 의하면 길이의 변화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소매 배래나비는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대명회전』과『세종실록』오례의 도설에는 넓은 배래소매이나『경모궁의궤』에는 배래나비가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요민속자료 제 66호' 두 점에서도 확인된다.

〈표 7〉 衣의 衣次

자 료	색상	옷감	장문
문종즉위년사여면복	深青	粧花衰服	장문설명 없음
대명회전	青	·	火一在肩,其二與華蟲・宗・彝各三・在兩袖・皆織成
國朝五禮儀序例 경모궁의궤	玄(青黑而微有赤)	繪	繪三章火說見上華蟲宗彝於其上・
상방정례	鴉青	熟綃	장문설명 없음
가례도감의궤	鴉青	熟綃	장문설명 없음
궁중불긔	鴉青	鱗楪紋紗, 生水甲紗	장문설명 없음
禮葬都監儀軌	青	熟綃	구장복의 문장[38]
중요민속자료 제66호	青	갑사, 은조사	구장복의 문장
복원품	鴉青(玄)	갑사	繪三章, 火一在肩,其二與華蟲・宗・彝各三・在兩袖

國朝五禮儀序例 卷之1 祭服圖說		*효장세자禮葬都監儀軌*服玩圖說		중요민속자료66 -*문화제대관*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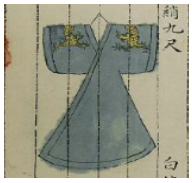		

본고의 고증 복원에서는 중요민속자료 제 66호 두 점 가운데 치수가 적은[총길이 115cm, 뒤품 46cm, 화장 95cm, 소매넓이 65.5cm, 밑 도련(앞+뒤) 313cm[39]]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어림 하였으며, 두 점이 은조사와 갑사로 되어 있으므로 갑사에 현색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짙은 아청색으로 염색을 하였다. 바느질은 중요민속자료를 참고 하여 홑옷이므로 솔기는 홑솔과 통솔로 처리 하고,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에 바대를 대었으며, 깃・도련・수구에는 衣의 감으로 8.5cm 나비의 선을 둘렀다. 중요민속자료 제66호 면복에는 동정과 고름이 있어 고름만 달아 제작하였다. 복원 제작과정에서 衣의 기본치수는 『조선시대 궁중복식』[40]에서 참고하였다. 〈표 7〉

4) 상(裳)

상의 기록은 '纁色粧花前後裳一件'[사여복]、'纁裳四章, 織藻・粉米・黼・黻・各二, 前三幅, 後四幅, 不相屬, 共腰有襞積,本色綼裼',[대명회전], '制與九章同,(裳以繪爲之其色纁..)'[경모궁의궤], '大紅熟綃次白熟綃壹疋, 入染次紅花拾柒斤, 梅實拾參斤'[상방정례]이다. 임오년가례에 의차는 상방정례와 같으나 동궁마마 의대발기에는 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상의 색상은 훈색과 대홍색이다. 『국조오례의서례』에 의하면 훈색은 '세 번 붉은 물을 들여야 훈이 된다(三染終色而爲纁)'고 하였으며 『상방정례』의 대홍색은 홍화 17근과 매실 13근으로 색을 내었다.

가례도감의궤에 '大紅熟綃 一匹'은 상과 폐슬의 소재이다. 상의 구성은 『국조오례의서례』에 의하면 '制與九章同'이라 하여 왕세자의 상과 전하의 상이 같으므로 '前三幅, 後四幅'이며 앞은 3폭・뒤는 4폭을 이어주어 모두 7폭으로 하고, 앞 3폭의 상 좌우로 藻・粉米·黼・黻 四章의 장문을 수놓았다.[41] 그러나 본 복원에서는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왕세손의 상에 장문을 '繪'한다고 하여 그림으로 그렸다.

前三・後四의 폭 이음은 효장세자의 예장도감과 숙종의 국장도감의궤에는 앞트임으로 하여 前三폭을 좌우로 나누인 모양이나 『국조오례의서례』와 영조 이후의 국장도감은 옆트임으로 前三・後四의 폭 이

〈표 8〉 裳의 衣次

	색상	옷감	장문
문종즉위년사여면복	纁	粧花	四章,織藻・粉米・黼・黻・各二,前三幅・後四幅,不相屬,共腰有襞積,本色綼裼.
대명회전	纁	·	
國朝五禮儀序例	纁	繪	制與九章同
상방정례	大紅	熟綃	장문설명 없음
가례도감의궤	大紅	熟綃	장문설명 없음
궁중불긔	·	·	장문설명 없음
禮葬都監儀軌	紅	綃	四章, 藻・粉米・黼・黻・各二
복원품	大紅	순인	四章, 繪藻・粉米・黼・黻・各二

國朝五禮儀序例	효장세자禮葬都監	英祖國葬都監都廳	正祖國葬都監都廳	밀창군조복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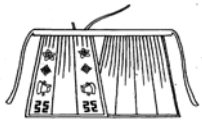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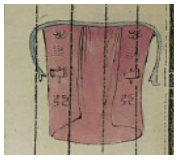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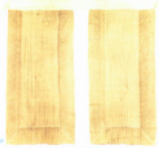

음으로 하였다.

주름의 모양은 '매 폭은 이어서 무수한 주름을 잡는다.'고 하였으나 『대명회전』과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을 기본으로 하여, 각 종 『의궤』를 참고하였으나 그 치수와 모양을 유추하기가 어려워 복원 제작에서는 선조의 7남 인성군의 증손인 밀창군(1677~1746)의 裳[출토유물][42]을 참고하였다. 이 유물은 前三・後四의 상으로 잔주름이 끝가지 잡혀있는데 이는 대명회전에서 보이는 주름[43]모양과 같기 때문이다.

상의 측면에는 순으로 한 벽이 있고 아랫단에는 순으로 한 석이 있다고 하였는데 벽・석의 넓이는 각 1.5촌으로 겉과 안을 합하여 3촌이라고 하였다. 1촌을 약 5cm(4.8)로 환산하여 벽・석의 나비를 7.5cm로 하였다. 『국장도감의궤』에는 허리의 색이 청색도 보이나 상의 의차가 한 가지 색이므로 허리와 끈은 상과 같이 하였다.〈표 8〉

5) 중단(中單)

중단의 기록은 '白素中單'[사여복]、'中單・ 以素紗爲之, 青領褾襈裾, 領織黻文九',[대명회전], '制與九章同, (中單以白繪爲之青領褾襈裾繪黻九於領)'[경모궁의궤], '白熟綃壹匹拾伍尺'[상방정례]이다.

임오년가례 의궤에는 상방정례와 같이 '백숙초'로 되어 있으나 동궁마마 의대발기에는 청삼이 '일남 인접문사 생수갑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단의 색은 왕실문헌에서 제시한 기록에 의하면 백[素]색과 청[藍]색 두 가지 색이 있다. 사여복의 白素는 『대명회전』의 素紗와 같으며, 『국조오례의서례』와 의궤에는 백색이지만 발기에는 青[日藍]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의궤의 기록이 전례에 의거한 기록인 반면 발기는 실제로 제작하는 궁녀들의 기록이므로 신뢰를 갖게 한다. 광무원년에 始定된 『예복』[44]에도 황제장복인 冕冠衮服十二章, 황태자 관복인 衮服九章의 중단이 모두 『대명회전』기록과 같이 소사로 되어 있으나 『중요민속자료』 제 66호 고종의 유물이 청색인 것은 의궤와 발기의 기록이 다른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단은 실행기록인 발기와 중요민속자료를 근거로 하여 青衫으로 제작하였다.

중요민속자료 제 66호에 의하면 중단은 衣와 구성이 같으나 길이가 도련부분의 선단 부분만큼 길지만 깃과 도련, 수구에는 현색[衣와 같은 색]으로 선을 둘렀으므로 衣와 감어림에 차이를 두었다. 이는 익종어진에서도 확인된다. 깃에 9개의 黻紋은 『대명회전』에는 '織'으로 되었지만, 경태원년흠사지제인 『국조오례의서례』와 『경모궁의궤』등 에는 뒤 중심에 1개 그리고 양 옆 좌우로 4개씩 그렸다. 복원과정에서 중단의 기본치수를 『조선시대 궁중복식』[45]에서 참고하였다. 〈표 9〉

〈표 9〉 中單의 衣次

	색상	옷감	불문
문종즉위년사여면복	白	素紗	青領褾襈裾. 領織黻文九
대명회전	素	素紗	
國朝五禮儀序例	白	熟綃	中單與殿下中單同制但領繪九黻
상방정례	白	熟綃	불문설명 없음
가례도감의궤	白	熟綃	불문설명 없음
궁중볼긔	日藍	鱗楪紋紗, 生水甲紗	불문설명 없음
禮葬都監儀軌	白	綃	領繪九黻
중요민속자료 제66호	青	은조사, 순인	領繪九黻
복원품	青	순인	領繪九黻

國朝五禮儀序例		*효장세자禮葬都監儀軌*		중요민속자료제66호, *문화제대관*,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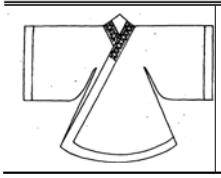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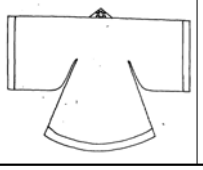			

6) 패(佩)

사여된 패는 훈색의 장화 패대에 금구와 번옥의 패옥을 갖추었다고 하였으나 대명회전에 의하면 패옥이 둘이며 친왕제라고 하였다. 玉佩에는 玉珩, 瑀, 琚, 衝牙, 璜이 있으며, 우 밑에는 옥화가 있고 옥화 밑에는 두 개의 옥적을 드리우며, '珩以下瑑雲龍文'으로 아래에는 운용문을 조각하였다. 위에는 금구가 있고 훈색 바탕에 赤・白・縹(옥색)・綠의 四采로 된 소수가 달려있다고 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등 제복도설에도 '制與九章同'이라 하여 전하의 패에서 옥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장・예장도감의궤에서 그 모양을 확인 수 있으나 익종어진[47]에서 보여 지는 패옥은 궁중유물전시관에 소장된 영왕비의 유물과 함께 있는 면복 패옥 함[48]

〈표 10〉 佩玉

文 獻	記 錄
大明會典 (永樂 3年定)	玉佩二・如, 親王之佩制, 珩以下瑑雲龍文, 上有金鉤, 以小綬四采副之. 四采・赤・白・縹・綠・纁質
문종즉위년사여면복 (景泰元年)	纁色粧花佩帶、[金鉤、玉珩璠全.]
國朝五禮儀序例	制與九章同[46]
상방정례	壹部

영조국장도감의궤	*정조국장도감의궤*	익종어진	영친왕비・면복패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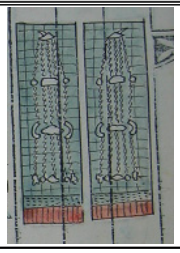			

에 있는 패옥과 같은 색과 형을 가지고 있다.〈표 10〉

7) 수(綬)

수는 뒤에 늘어뜨려 후수라고도 한다. 사여된 수는 훈색의 장화금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대명회전에서는 대수와 소수로 나누어 대수는 패와 같이 훈색 바탕에 적·백·표·록의 사채로 되었으며 소수가 삼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두 개의 옥환이 있으며 모두 직성 되었다고 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등에는 '制與九章同'이라 하였으나 수는 홍화금이나 두 개의 금환은 왕의 것으로 상방정례에 세자궁 관례시 수차는 두 개의 은구자와 은원환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예고 26 장복조에 영조 22년(1746) 문단을 금한 뒤에 상방으로 하여금 적·청·현·표·녹색의 단을 짜서 만들게 하되 무늬가 없게 하니 무릇 15조였다. 아래 끝부분의 망수는 그대로 후수의 짠 실로 맺어 3단으로 나누어지게 하였다고 한다.[49] 하여 익종[효명세자] 어진의 소수의 적·청·현·표·녹의 순서와 같다. 그러나 문헌 마다 옥환, 은환 등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궁중유물전시관에 영왕비의 유물은 패와 수[50]가 짝을 이루고 있다.〈표 11〉

8) 폐슬(蔽膝)

폐슬의 기록은 '纁色粧花蔽膝一件'[사여복]、'隨裳色, 四章, 織藻·粉米·黼黻·各二, 本色緣, 有紃, 施于縫中, 其上玉鉤二'[대명회전], '制與九章同, 蔽膝以繒爲之其色纁上有紕下有純去上五寸繡以藻粉未黼黻'[경모궁의궤], '大紅熟綃參尺貳寸, 五色多繪壹部'[상방정례]이다.

임오년가례 의궤에는 '大紅熟綃 一匹'로 상의 의차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폐슬은 훈色과 대홍색으로 상과 같은 소재이다. 장문은 폐슬 역시 상과 같이 대명회전에서는 '織'이지만 『국조오례의서례』와 의궤에는 '制與九章同'으로 구장복과 같은 구성[51]으로 앞면에는 오색의 꼰 실로 둘러싸고, 양쪽으로 藻·粉米·黼·黻의 4장을 각 1쌍씩 수놓는다. 그러나 본 복원에서는 장문을 그림으로 그렸다.

『국조오례의서례』도설에서의 형태와 영조 이후 『국장도감도청의궤』의 폐슬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방정례에 '五色多繪壹部'의 기록으로 입증된다. 이와 같이 영·정조 국장 의궤에서의 폐슬은 익종어진에서 폐슬의 모양과 비슷하여 앞면에는 오색의 꼰 실로 둘러싸고 양쪽으로 장문을 수놓았다. 상방정례에서는 大紅熟綃參尺貳寸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으나 익종어진에서 폐슬

〈표 11〉 綬

文 獻	記 錄					
大明會典 (永樂 3年定)	大綬·四采. 赤·白·縹·綠·纁質. 小綬三采間施二玉環. 皆織成					
문종즉위년사여면복 (景泰元年)	纁色粧花錦綬				익종 어진	
國朝五禮儀序例	制與九章同[綬以紅花錦爲之施以雙金環]					
상방정례	錦衣鄕職, 內拱大紅雲紋紗, 銀鉤子貳箇, 銀圓環貳箇, 鍍黃金, 水銀錢.					
가례도감의궤	기록 없음					
궁중불긔	기록 없음					
國葬·禮葬都監儀軌	*孝章世子禮葬都監*		*정조 국장 도감 의궤*		영친 왕비 후수	

〈표 12〉 蔽膝의 衣次

	색상	옷감	장문
문종즉위년사여면복	纁	粧花	四章, 織藻・粉米・黼黻・各二
대명회전	裳色	·	
國朝五禮儀序例	纁	繒	繡以藻粉米黼黻
상방정례	大紅	熟綃	장문설명없음
가례도감의궤	大紅	熟綃	장문설명없음
禮葬都監儀軌	紅	綃	繪以藻粉米黼黻
복원품	大紅	순인	繪以藻粉米黼黻

國朝五禮儀序例	*효장세자禮葬都監*	*英祖國葬都監都廳*	*正祖國葬都監都廳*	익종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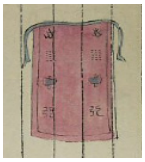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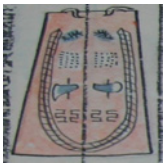		

의 모양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어 착장의 위치와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표 12〉

9) 대대(大帶) 벽

대대가 사여된 기록에는 '紅白素大帶'로 하여 겉은 紅, 안이 白으로 보이나 대명회전에는 '素表朱裏, 在腰及垂皆有綼, 上綼以朱,下綼以綠, 紐約用青組'라 하여 겉은 희고 안이 붉다고 하였으며, 허리와 내리는 부분에 벽(綼)을 하는데 위는 朱, 아래는 綠으로 하며, 청조로 끈을 하여 묶었다고 하였다.

숙종 39년(1713) 대대의 색을 겉은 희고 안은 붉게 하는 제도로 바로 잡았다.[52] 그러나 숙종 이후 국장・예장 도감에서는 겉과 안이 아니라 위와 아래로 색을 달리하고 있다. 영조대의 상방정례 에는 '草綠雲紋匹緞半幅拾參尺, 大紅雲紋匹緞半幅陸尺伍寸, 內拱白無紋匹緞半幅陸尺伍寸, 青組壹部'의 기록이 있어 겉은 대홍, 안은 백, 벽은 초록으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궁중유물 전시관의 영친왕비의 대대는 겉이 백색이며 벽이 위와 아래 모두 綠으로하였다.〈표 13〉

〈표 13〉 大帶

文 獻	記 錄
大明會典 (永樂 3年定)	素表朱裏. 在腰及垂皆有綼. 上綼以朱, 下綼以綠. 紐約用青組
문종즉위년사여면복 (景泰元年)	紅白素大帶、[靜線組條全.]
國朝五禮儀序例	制與九章同[大帶以緋白錦合而縫之]
상방정례	草綠雲紋匹緞, 大紅雲紋匹緞, 內拱白無紋匹緞, 青組,

국조오례의서례	*영조국장도감의궤*	*정조국장도감의궤*	영친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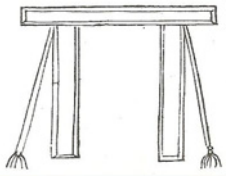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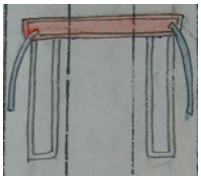		

〈표 14〉 韈, 潟

文 獻	記 錄
大明會典 (永樂 3年定)	韈潟皆赤色. 潟用黑絇純・黑飾潟首
문종즉위년사여면복 (景泰元年)	大紅素紵絲舄一雙、[襪全.]
國朝五禮儀序例	制與九章同[襪以緋緞爲表緋綃爲裏有綦]
상방정례	大紅廣的貳尺柒寸, 內拱大紅水細貳尺柒]

						영친왕비의 襪舄		익종어진	
국조오례의 서례		정조 국정도감의궤		효장세자 예장도감의궤					

10) 말(襪), 석(潟)

사여복에서 襪은 갖춘다는 의미로 '襪全'의 기록이 있는데 대명회전에는 적색으로 되어있다. 『국조오례의서례』등에도 겉과 안이 緋색으로 모양의 큰 차이는 없으나 발목에 이음선과 끈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석은 조선왕실의 문헌에는 대홍색, 대명회전에는 적색으로 되어 있으며, 흑색의 생사로 코에 장식을 하고 석 앞에는 흑색으로 장식한다고 하였다.

석의 모양도 전반기 『세종실록』오례의에는 대명회전과 같이 신목이 길었으나 『국조오례의서례』와 『경모궁의궤』에서는 목이 짧아지고 있으며 익종어진[53]에서 보이듯이 후반기에는 履 모양의 운두가 낮은 모양이다. 이는 궁중유물 전시관에 영왕비의 청석[54]에서도 확인 된다. 〈표 14〉

이상과 같이 고증 복원에서는 임오년 왕세자 가례 법복인 면복을 의차에서 제시한 부분인 衣, 中單, 裳,蔽膝만 먼저 복원제작 해 보았다. 면복의 일습에서 아직 고증이 미비한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宋의 『석전의식(釋奠儀式)』에 이르기를, "그림은 양(陽)의 일이니, 그런 까닭으로 의(衣)에 있고, 수(繡)는 음공(陰功)이니, 그런 까닭으로, 상(裳)에 있다. 불(芾)은 앞에 있고, 패(佩)는 좌우에 설치되고, 인끈[組綬]은 등에 짊어지고, 대대를 또 그 위에 가(加)한다."[55]고 하였다.'하니 이는 의에 장문은 그리고, 상과 폐슬의 장문은 수를 놓으며, 불은 앞에 있고, 패는 좌우로 하며, 수는 뒤에 하고, 그 위에 대대를 가하는 면복의 제작과 착장 법을 뜻한다.

익종어진	박성실 복원		안애영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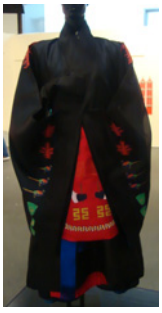

Ⅳ. 결론

1882(고종 19, 壬午)년 2월 純宗의 첫 번째 가례인 왕세자가례는 1894년 갑오경장 이전 명성왕후가 생존에 있었던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가례로 조선 후기에 가장 호화로운 가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왕세자 가례는 『가례도감의궤』가 『光緖 八년 壬午 二月 日 王世子嘉禮都監儀軌』 上·下의 표제로 7건 모두 현존한다. 장서각에는 1882(임오)년 가례 관련 『궁중불긔』인 의대·의복발기, 의차발기, 도첩·도련발기 등 다수를 소장하고 있다.

1882년 왕세자의 가례 납빈의도 『국조오례의』에 납빈의와 같이 六禮(납채·납징·고기·책빈·친영·동뢰)가 거행되었다. 납채·납징·고기·책빈의에는 왕이 敎命과 傳敎를 내리는 의식으로 거행되었고, 세자는 가례복인 면복을 갖추고 친영의를 행하기에 앞서 왕으로부터 빈을 맞이하라는 명을 받는 임헌초계를 행하고, 빈을 맞이하는 친영과 동뢰의를 거행한다. 왕세자가 친영의에서 갖추는 복식은 세조 6년에는 원유관과 강사포를 입었으나, 문종 즉위년(1450) 세자 친영 때의 복식은 면복을 착용하는 것이 예절에 합당하다고 하여 면복이 사여된 이후 왕세자의 가례복으로 법복인 면복을 갖추어 입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1474)에는 임헌초계에 면복을 착용하고, 동뢰연 후에 조복을 상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하여, 왕세자 가례복을 면복과 조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세종실록』오례의를 底本으로 한 『국조오례의』편찬에 오류로 이해된다.

왕세자 대례복은 실록에 의하면 세종대까지는 조선왕실에서 명으로부터 사여 받은 六梁冠·朝服·玉帶·玉佩이었으나 세종 32년 왕세자 면복으로 7장복을 청하여 같은 해[문종 즉위년(1450)]에 七章冕服 1副를 가져온다. 이렇듯 조선왕실에서는 사여 받은 왕세자 면복을 근거로 법제화하여 『국조오례의서례』卷一에 제시하였다. 『경모궁의궤』, 『종묘의궤』, 『사직서의궤』 등에 제복도설에도 '七章 景泰元年(1450) 欽賜之制'라 하여 사여된 면복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規例로 기록된 왕세자 면복과 그 부속제구에 대해서는 영조 28년(1752) 상의원에서 편찬한 『상방정례』에 세자궁 법복 내용에 있다.

『가례도감의궤』로 남아있는 왕세자 가례 9건의 왕세자가례 관련 의궤 역시 문종 즉위년(1450)에 사여된 면복을 근거하고 있어 각 의궤의 기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조선왕실에서 면복의 제작은 문종 즉위년 기록에서부터 보이며 선조 33년 기록에는 평소에도 상방에는 면복장인이 있어 면복을 만들었다고 하여 사여면복과 본국에서 제조한 면복이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종의 임오년 가례 의궤 역시 1819(己卯)년의 가례를 전례로 하여 기록하고 있으므로 면복이 의는 아청숙초, 중단은 백숙초, 상과 폐슬은 대홍숙초로 되었다. 그러나 임오가례 관련 『불긔』는 면복 2건의 의차가 '冕服[玄衣] 二건이 鴉靑鱗楪紋紗와 鴉靑生水甲紗이며 중단은 靑衫 二건으로 日藍鱗楪紋紗와 日藍生水甲紗'로 되어 있어 의궤와 중단의 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복식이 의례서의 특성상 전례로 이어지는 의궤의 기록보다 실제 제작 실무자들이 기록한 발기의 기록에 비중을 두는 것은 현존하는 국립박물관 중요민속자료 제66호 면복의 중단이 청삼인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가례 기록인 의궤와 의대발기에서 의차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복식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의궤연구에서 더 발전하여 발기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임오년 가례관련기록인 의궤와 발기의 기록에 따른 왕세자면복 일습의 복원복제연구는 많은 한계에 임하게 된다. 대부분의 문헌들의 자료가 의례서로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제 복원 제작함에 큰 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의차의 시대성과 다양성, 색의 표현, 구성방법 등에는 이해에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국장·예장도감의궤』의 복완질 도설에서는 다양한 색과 모양을 접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하였고, 실제 제작자인 상궁들에 의해 기록된 『궁중불긔』에서는 시대에 맞는 옷감의 이름과 다양한 색의 표현으로 복원에 가깝게 접근 할 수 있었다.

실제 복원 제작에서는 색과 모양은 왕세자 신분의 익종(효명세자)어진을 기본이 되었고, 구성법과 참고

치수는 현존하는 유물인 중요민속자료 제66호(구장복), 영왕비 유물, 밀창군 이직의 출토유물 등을 참고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유물의 안전과 보존의 중요성, 새로운 유물의 발굴, 시대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출토유물의 연구는 복식연구에서 중요한 분야이며 과제이다.

끝으로 다양한 정보의 공유시대에 학문을 하는 우리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것을 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함을 느낀다.

참고문헌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十二*. 藏書閣篇 Ⅲ,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5.
2) 김용숙 (2005).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5쇄). 서울: 일지사, p. 376.
3) 高光林 (1972). *冕服에 關한 硏究*. 仁川敎育大學校.
여춘구 (1976). *王世子 嘉禮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숙 (1983). *조선시대 면복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성실 (2004). 숙종인현후의 가례복식. *조선조 숙종인현후 가례의 연구*. 문화재청.
4) 유송옥 (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서울: 수학사, p. 145.
5) [ ]의 내용은 문헌에는 없으나 연속적인 의식으로 같은 복식을 착용한 것으로 봄.
6)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1407) 7월 13일(갑자)
7) *세종실록 권 36*, 세종 9년(1427) 4월 26일(갑신)
'上以遠遊冠絳紗袍, 御勤政殿月臺上幄次, 率文武群臣, 行王世子醮戒禮如儀。 王世子具朝服,'
8) 세종 72권, 18년(1436) 6월 15일(경술) 3번째기사
9) 안애영 (2009). 1882(壬午)年 王世子 嘉禮 硏究. *藏書閣, 22*.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p. 113.
10) *문종실록 권 1*, 즉위년(1450) 5월 12일(을묘)
11) 세종 32년(1450) 1월에 세종은 왕세자가 신하들과 같은 조복을 입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중국에 왕세자 면복으로 7장복을 청하였는데(세종 32년, 1450, 윤1월 21일 기사) 같은 해[문종 즉위년(1450)] 5월에 七章冕服 1副를 가져온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문종즉위년, 1450, 5월 17일 기사) 八旒平天冠, 七章衮服(深青粧花衮服), 白素中單, 纁色前後裳, 纁色蔽膝, 纁色粧花錦綬, 纁色佩帶, 紅白素大帶, 玉圭, 大紅舄, 襪로 영락 3년에 제정한 왕세자관복[冕服-衮冕七章]제도와 같다
12) *세조실록 권 20*, 세조 6년(1460) 4월 18일(갑자)
13) *현종실록 권 24*, 현종 12년(1671) 4월 1일(임오)
14) *세종실록 권 31*, 세종 8년(1426) 2월 26일(경인)
15) *세종실록 권 127*, 세종 32년(1450) 윤1월 21일(병인)
16) *문종실록 권 1*, 즉위년(1450) 5월 17일(경신)
...計頒去王世子冕服一副、八旒香皀皺沙平天冠一頂、【玉珩旒珠金事件, 線條全。】七章絹地紗衮服一套、計七件條副深青粧花衮服一件、白素中單一件、纁色粧花前後裳一件、纁色粧花蔽膝一件、【玉鉤線條全。】纁色粧花錦綬一件、纁色粧花佩帶一副、【金鉤、玉珩璠全。】紅白素大帶一條、【靜線組條全。】玉圭一枝、【袋全。】大紅素紵絲舄一雙、【襪全。】大紅平羅銷金雲龍夾包袱三條。
17) 대명회전의 세자관복[冕服-衮冕七章](大明會典 卷60, 禮部 18, 官服條 世子官服)

	永樂三年定
冕冠	冕冠。玄表朱裏。前圓後方。前後各八旒。每旒五采繅八就。各貫三采玉珠八。赤。白。青色相次。玉衡。金簪。玄紞。垂青纊充耳。用青玉。朱紘纓。承以白玉瑱
圭	玉圭。長九寸。以錦約其下。弁韜。
衮服	青衣三章。火一在肩, 其二與華蟲。宗。彝各三。在兩袖。皆織成。本色領標襈裾
裳	纁裳四章。織藻。粉米。黼。黻。各二。前三幅。後四幅。不相屬。共腰有襞積。本色綼裼
中單	中單。以素紗爲之。青領標襈裾。領織黻文九
蔽膝	隨裳色。四章。織藻。粉米。黼黻。各二。本色緣。有紃。施于縫中。其上玉鉤二
佩	玉佩二。如, 親王之佩制。珩以下瑑雲龍文。上有金鉤。以小綬四采副之。四采。赤。白。縹。綠。纁質
大帶	素表朱裏。在腰及垂皆有綼。上綼以朱。下綼以綠。紐約用青組
綬	大綬。四采。赤。白。縹。綠。纁質。小綬三采間施二玉環。皆織成
韈潟	韈潟皆赤色。潟用黑絇純。黑飾潟首

18) 정조 때 경모궁에서 제사지낼 때의 의식을 기록한 의궤
19) *國朝五禮儀序例 卷之一 吉禮 祭服圖說*
20) *광해군일기 권 52*, 광해 4년(1612) 4월 7일(신미)
21) 鴉青熟綃 二匹, 白熟綃 一匹 十五尺, 大紅熟綃 一匹
22) 유송옥. *앞의 책*, p. 144.
23) 왕세자의 가례로 『가례도감의궤』를 7건[규장각, 시강원, 예조, 정족산성,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성]을 제작했으며 2책으로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다. 표제는 『光緖 八년 壬午 二月 日 王世子嘉禮都監儀軌 上·下』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규장각에 5건, 장서각에 1건, 일본궁내성에 1건이 소장되어 7건 모두 현존한다.(송혜림 (2004). *조선조 가례도감의궤의 서지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6~127.)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 十二* 藏書閣編Ⅲ,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55.
25) *문종실록 권 1*, 즉위년(1450) 3월 3일(정미)
26) *단종실록 권 3*, 즉위년(1452) 9월 1일(경인)
27) *선조실록 권 131*, 선조 33년(1600) 11월 20일(경신)
28) *선조실록 권 155*, 선조 35년(1602) 10월 25일(계축)

29) *광해군일기 권 32*, 광해 2년(1610) 8월 10일(임오)
30) 昭顯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1645년(仁祖 23) 昭顯世子(1612~1645)의 禮葬에 관한 기록
31) 孝章世子禮葬都監儀軌: 1728년(英祖 4) 英祖의 아들 효장세자(추존 진종)의 장례에 관한 기록. 二房所掌에 吉儀仗·凶儀仗·服玩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
32) 순조 26년(1826) 당시 왕세자의 신분인 18세의 효명세자로 8면류관에 7장복을 입은 그림으로 사후에 추존된 익종의 어진이다.
33) 문화재청 (2006). *문화재 대관 중요민속자료 2*, 대전: 문화재청, pp. 66-71.
34) *위의 책*, p. 69.
35) 궁중유물전시관(2002). *황실복식의 품위*. 서울: 궁중유물전시관, p. 46.
36) 효장세자 『예장도감의궤』에는 뒷면에 山이 그려져 있으나 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37) *영조실록 권 57*, 영조 19년(1743) 4월 14일(정유)
38) 신분은 왕세자이나 장문은 5장을 그림.
39) 문화공보부 문화제관리국 (1986). *조선시대궁중복식*. 서울: 문화공보부문화제관리국, pp. 24-26.
40) *위의 책*, pp. 24-26.
41)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 (1863) '用紅熟綃 前三幅 後四幅 前三左右 繡藻·粉米·黼·黻四章 有綼有綬 側緣曰綼 下緣曰綬 腰間襞積無數 別用紅熟綃 綴前後幅 而夾縫之兩端有繫'
42) 밀창군(전주이씨 이직, 1677~1746)은 선조의 7남 인성군의 증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출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환생 (2006). *석주선박사 10주기 추모 출토복식 특별전*, p. 88.)
43) 대명회전의 주름모양은 양옆이 잔주름으로 잡혀져 있다. 그러나 가운데 수놓은 부분은 장문을 살리기 위해 주름을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44) 光武元年始足禮服
45) 문화공보부 문화제관리국. *앞의 책*, pp. 24-26.
46) 佩二上設衡以金鉤次以重衡中以琚瑀下有雙璜衝牙在雙璜之間又設雙滴在衝牙兩璜之間穿以藥玉珠其衡琚瑀雙璜衝牙滴子竝以珉玉
47) 유송옥. *앞의 책*, p. 17.
48) 궁중유물전시관. *앞의 책*, p. 47.
49) 김명숙 (1983). *조선시대 면복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 66.
50) 궁중유물전시관. *앞의 책*, p. 47.
51) 蔽膝以繒爲之其色纁上有紕下有純去上五寸繡以藻粉未黼黻
52) 박성실. *앞의 책*, p. 83.
53) 유송옥. *앞의 책*, p. 17.
54) 궁중유물전시관. *앞의 책*, p. 46.
55) *경모궁의궤* 전하(殿下)의 면복(冕服) [명(明)나라 영락(永樂) 9년에 중국에서 내려 준 제도에 의거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대명회전』*, 역대 *『왕세자가례도감의궤』*, *『궁중불긔』*,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의서례』*, *『국조속오례의보서례』*, *『국혼정례』*, *『상방정례』*, *『춘관통고』*, 역대 *『禮葬・國葬都監儀軌』*, *『宗廟儀軌』*, *『社稷署儀軌』*, *『景慕宮儀軌』*.